

발간등록번호

11-1620077-000012-01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평가 및 개정 과제 토론회

일 시 : 2014. 7. 18.(금) 16:00 ~ 18:00

장 소 : 국채보상운동기념관 2층 교육장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한국인권법학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발간등록번호

11-1620077-000012-01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평가 및 개정 과제 토론회

일 시 : 2014. 7. 18.(금) 16:00 ~ 18:00

장 소 : 국채보상운동기념관 2층 교육장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한국인권법학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토론회 일정

- 일 정 : 2014. 7. 18.(금) 16:00 ~ 18:00
- 장 소 : 국채보상운동기념관 2층 교육장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한국인권법학회

사회: 박진완(경북대학교 교수, 한국인권법학회장)

시간	내용	발표자
16:00~16:05	개 회	사회자
제1부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16:05~16:30	대구광역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필요성과 방안	조성제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16:30~17:10	지정토론	구인호 (법무법인 참길 변호사) 이동관 (매일신문 부장) 김태열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권혁장 (대구인권사무소 소장)
17:10~17:20	휴 식	
제2부 종합토론		
17:20~18:00	종합토론	이채식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윤성아 (전 대구광역시의원) 류준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미선 (박사, 경남대학교)

◆ 주제 발제

- 대구광역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필요성과 방안 7
조성제(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부 록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문 45
-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51
-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해설서 63
- 시·도 인권조례 81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83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85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91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96
 -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00
 -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07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10



주제발표

대구광역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필요성과 방안





대구광역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필요성과 방안

조성제(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인권개념과 인권법제정의 논의

1. 인권개념

인권(Human Rights, Menschen Rechte)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에 대하여 기본권(Fundamental Rights, Grudrechte)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또한 제약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다.¹⁾ 우리 헌법은 제10조 전단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2문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되어야 할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며 그 내용을 인권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은 인권과 같은 의미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라는 인권의 성격을 강조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할 실익이 없으며 양자를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²⁾ 다만 여기에서의 인권은 21세기에 인권의 새로운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는 평화권, 개발도상국들의 발전권³⁾ 등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는 거리가 있는 권리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1) 윤명선, 인터넷시대의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2, 305면.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1, 242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59면.

3) 평화권은 유엔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1991년 11월 유엔이 선포한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People to peace)’로서 세계의 새로운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이 실패한 전쟁으로 평가되고 전쟁에 회의를 품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권을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각 국가, 비정부기구, 그리고 인권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유엔차원의 문서로 새로운 인권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박경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인권조례⁴⁾는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란 세계인권 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권의 범위 및 내용과 세계인권선언을 추가한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의 인권 범위 및 내용도 앞에서 논의된 평화권과 개발도상국들의 발전권 등을 제외한 인권개념과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2. 인권법제정의 논의

정부차원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는 김영삼 정부⁵⁾에서 시작되었지만 인권법제정의 논의는 김대중 정부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6월 미국 방문시 인권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인권법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화 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인권법 초안을 마련하였고 동년 9월 25일 인권법 시안⁶⁾과 입법추진계획을 공개하였다.

정부의 인권법 제정의 시도는 법무부에서 1998년 인권법 초안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인권법 시안은 명칭을 인권법으로 할 것인지 인권위원회법으로 할 것인지의 견해대립,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설치

2012, 243-244면.

- 4) 원래의 명칭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임; 광주시는 인권조례에서 인권의 정의에 세계인권 선언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는 인권조례에서 인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 5) 김영삼 정부시절 법무부는 1996년 인권위원회법(가칭)을 제정하여 법무부, 외무부, 노동부의 공무원, 변호사, 교수를 위원으로 하는 인권위원회를 1998년까지 서울과 주요 지방도시에서 설치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접수와 조사처리, 인권침해사례 조사,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상담, 인권규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련 안을 검토한바 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정부차원의 수준에서만 머물렀다(1996년 정기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참조)
- 6) 당시 법무부에서 추진한 인권법안의 내용은 첫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를 막고, 둘째,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 필요한 경우 경찰서유치장, 교정기관, 외국인보호소, 군교도소,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시찰과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단체 및 인권운동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며, 셋째 국가가 인권단체를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다.

하려고 한 점과, 충분한 여론수렴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의 비판 등 정부의 법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⁷⁾.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이러한 이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과행을 거듭하다가, 2001년 4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수정안이 가까스로 통과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산하에 두려던 법무부의 입장을 극복하고 최종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2001년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을 의결하였으며, 5월 24일 법률 제6481호로 공포되고, 6개월 후인 11월 25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⁸⁾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독자적인 인권법체계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형성되었고⁹⁾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으로 대학원내의 인권법센터설치와 인권법과목의 개설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¹⁰⁾.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인권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한 인권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의 물음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인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구체화에 관한 현재의 법규와 제도를 분석·비판하고 그 개선과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법학의 한 영역’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¹¹⁾ 또한 인권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범영역의 규범체계를 연구하는 여타 다른 법학(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 및 형사소송 등)과 달리 범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범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관련문제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 법학분야라고

7)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안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하는 경우 오히려 업무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면서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 및 국민일반의 차별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방대한공무원 조직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정부기관 산하의 독립법인으로 하는 경우 독립성이 오히려 보장될 수 없게 된다는 시민사회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였다(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독립성 평가와 과제, 법학연구 제3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년, 14-15면).

8) 정영선, 위의 논문, 10면.

9) 기본 3법을 주축으로 하는 대륙의 판례법 체계를 수용한 우리 법체계에서는 오랫동안 인권법이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인권개념이 계속적으로 언급되었지만 헌법학과 형사법 영역에서 논의된 정도이다(양천수, 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 법학연구 제48권 제2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2008, 43면)

10)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서울대 등 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권법센터가 운영 중이며, 17개 법학전문대학원내에 인권법학회 또는 인권법연구회가 발족되어 활동 중이다.

11) 같은 뜻; 박찬운, 인권법의 개념 정립과 로스쿨에서의 교육방법에 대한 소고, 인권법 평론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8, 3면.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법은 종합법학으로서 어떤 특정영역의 법규범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법영역을 대상으로 인권이라는 시각으로 관련된 법 영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제시를 목표로 한다. 즉 ‘인권법 측면에서의 헌법, 인권법 측면에서의 형사법’ 같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통일된 잣대를 사용하여 관련 법영역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¹³⁾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권법 제정의 논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근거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선행연구문헌을 검토해보면 1998년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국가인권기구 조직법적 내용이외에 새로운 인권기준을 설정한다든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의 범주를 확대하는 등 인권실체법적 내용이나 인권관련 법령에 두루 적용되는 인권기본법적 내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인권법제정이 무산되었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는 방향이라면 인권법제정의 의의가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인권법이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별도의 인권법제정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¹⁵⁾ 우리의 미래사회에서 인권이 가져야 할 위상을 현재보다 훨씬 높여야 할 필요성, 구미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안에 복잡하고 다양한 인권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수준이 높으므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별도의 포괄적인 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살펴보면 인권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만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 존중, 충족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의무를 논의, 계획, 이행, 교육하는 국내 인권레짐을 형성하므로 인권정치의 제도화를 통하여 인권국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법이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절차,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

12) 박찬운, 위의 논문, 2008, 3면.

13) 인권법의 연구대상으로는 인권본질론, 인권사상사, 인권운동사, 인권사회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법 기초분야와 국제인권법, 차별금지법, 인권침해구조론, 인권 NGO 등을 연구하는 인권 보장론 분야, 그리고 각 인권 주체 또는 인권을 내용별로 연구하는 인권법 각론 분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박찬운, 위 논문, 4면, 7면).

14) 광노현, 법무부 인권법안의 국가인권기구 이해 및 설계에 대한 분석과 비판, 가톨릭과학연구 제11권,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1999, 90면; 이계수, 국민인권위원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10권 제2호,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67면.

15) 유남영,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저스티스 제129호, 한국법학원, 2012, 59면.

(NAP, National Action Plan), 및 인권교육의제도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인권의 지방화를 위한 지방인권기구의 설치,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기업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해외개발원조에 있어서의 인권의 고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는 현재 7개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여 매년 1, 2개의 국가보고서를 조약기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약기구로부터 각종권고를 받고 있다. 이러한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놓고 국내에서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 이행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국제인권조약 및 그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¹⁶⁾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 동 계획은 국가가 각종 인권 문제의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및 국제사회의 권고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므로 국가의 기본계획으로서 법령상의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외부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을 법제화하여 계획의 수립, 이행, 보고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지방인권기구의 설립은 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무이기도 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 내지 행정업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인권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란 국가의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5개년 계획으로 2007년 5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었고, 2012년 3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각국에 인권NAP 수립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었다. 1993년 호주가 최초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1년 3월 현재 약30여개 국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수립국가는 다음과 같다. “호주(1993, 2004), 라트비아(1995), 말라위(1995), 필리핀(1996), 브라질(1996, 2009), 남아프리카공화국(1998), 멕시코(1998, 2004, 2008), 에콰도르(1998), 인도네시아(1998, 2004), 베네수엘라(1999), 볼리비아(1999, 2009), 노르웨이(2000), 콩고(2000), 태국(2001), 스웨덴 (2002, 2006), 리투아니아(2002), 몽골(2003), 몰도바(2004), 모리타니(2003), 네팔(2004), 뉴질랜드(2005), 페루(2006), 나이지리아(2006, 2009), 과테말라(2007), 스페인(2008), 중국 (2009), 카자흐스탄(2009), 태국(2009)”(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2012. 3, 7-8면)

지방인권기구는 지역에 의한 지역인권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인권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¹⁷⁾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¹⁸⁾의 설치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된 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의 수립, 이행, 보고 등에 관한 절차의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지방인권기구의 설립문제 등 인권의 실제적 보장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입법을 통하여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명칭을 ‘인권법’으로 개칭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논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¹⁹⁾.

II. 인권의 실질화 방안으로서의 인권조례

1. 인권조례제정 및 정착의 필요성

2007년 광주광역시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여 최근 까지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내용을 참고하여 인권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각 지방자

17) 유남영, 위의 논문, 71-73면; 광주광역시는 인권도시를 지향하면서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천, 인권지수의개발과 시행, 인권교육체계의 구축, 인권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인권기구인인권증진시민회의의 설치 등이 포함된 인권조례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유남영변호사는 이러한 지방인권기구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에 맡겨줄 것이 아니라 이를 법령으로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8) 1977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이래로 40개 이상의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포괄적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1960년대에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57)에 의하여 시민권위원회(Commission on Civil Rights)가 설치되었는데 실제법과 조직법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인권법을 제정하였지만 별도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인권법’ 명칭의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에 관한 실제적인 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조직법적 규정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백운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7-30면).

19)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부산, 광주, 대구 세 곳에 각각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그 법적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1조이다. 부산과 광주는 2005년 10월 11일과 12일에 대구는 2007년 8월 31일에 개소하였다. 그 이후에는 이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지역사무소가 개설되지 않고 있다.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접근성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치단체의 인권조례제정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권조례제정 및 정착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헌법,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며 또한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법률의 수준에서 더욱 구체화 되고 다시 조례의 수준에서 한번 더 구체성과 현장성이 강화되어 규율된다.²⁰⁾ 두 번째, 조례제정을 통한 인권증진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²¹⁾ 세 번째 일상생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인권실행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의 규약이나 국가차원의 기구나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보호와 증진 방안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전담기구가 필요하며, 부산, 광주, 대구에 인권지역사무소가 있지만 지자체의 행정기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서 인권전담기구가 필요하다.²²⁾ 네 번째 지방공동체에서 인권규정이 아래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시민들과 특히 소수자 그룹의 실질적인 권한강화에 유리할 수 있다.²³⁾ 다섯 번째,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접근방법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실행방향에 있어 구체적이고 그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다.²⁴⁾

실례로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로서 이를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²⁵⁾ 또한

20)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제3호, 2012, 312-313면.

21) 안진,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533면.

22) 김중섭,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법적근거, 현상과 인식, 제33권 제4호, 2009, 121면; 부산, 광주, 대구의 인권지역사무소의 진정사건은 개소 시점에 대비하여 4-10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연간보고서, 2010년 연간보고서 참조); 2010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대전·충청지역의 진정건수는 1,432건에 이르렀다

(http://www.cham.or.kr/bbs/zboard.php?id=join_01&no=270 검색일 2014. 2.5)

23) 홍성수, 앞의 논문, 308면

24) 조상균,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조례의 내용과 과제, 법학논총 제29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16면.

25) 정영선, 인권조례 제정동향과 향후 과제, 법학논총 제18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162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440건으로 매년 평균 6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⁶⁾ 이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단순히 여론을 의식한 모방이나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인권의 실질화 방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1) 인권의 실질화 체계²⁷⁾

구분	세계	국외 지역	국가	국내지방
규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지역인권규약(예: 유럽인권협약 등)	헌법, 인권 관련 법령	인권관련 조례
기구	국제인권기구(예: 유엔 인권이사회)	(예: 아프리카 인권기구, 유럽인권재판소 등)	정부, 국가인권기구(예: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지자체인권기구(인권옴부즈만 등)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308면 표 수정)

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제정 현황

인권조례²⁸⁾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

2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3

27)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제3호, 2012, 308면

28) 조례제정권에 대하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한사무’의 성격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인권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당시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 하였던 바, 그 답신에서 인권업무는 국가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확인한바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사회장기본법 제5조와 제6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법률에서 인권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조항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률의 위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

며 접근방법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실행 방향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확보되는 기본조례를 말한다²⁹⁾.

최근까지 이러한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4곳, 기초지방자치단체 50곳이다³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지역의 제정역량, 입법 환경 등에 따른 독특한 제정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공통적인 표준유형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지역의 상황이 반영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³¹⁾

(표2)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제정 현황

지 역	조례 명	제정 및 공포 년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07-05-15(제정)
		2012-01-01(2차 전부개정)
		2012-01-01(공포)
		2013-04-01(일부개정)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2010-03-25 (제정및 공포) 2013-12-12(일부 개정)
전라북도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10-07-09 (제정및 공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02-22 (제정및 공포)
		2013-07-10(행정기구 설치)
		2014-03-19(일부개정)
충청남도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2-05-10 (제정및 공포)
전라남도	전라남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07-05 (제정및 공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2012-09-10 (제정)
		2012-09-28 (공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0-11 (제정및 공포)

례도 있다(대판, 1992. 6. 23, 92추17). 인권조례는 주민의 권익,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김중섭, 앞의 논문, 130-131면). 따라서 그러한 범위내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본다.

29) 조상균·허창영, 국내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인권법 평론 제8호, 2012, 192면.

30)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경상남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이다. 현재까지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이다.(한국인권재단 인권아카이브, 2014. 5, 9기준)

31) 조상균·허창영, 앞의 논문, 192면.

지 역	조례 명	제정 및 공포 년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2012-11-02 (제정)
강원도	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2013-06-07(제정)
경기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8-08(제정)
경상북도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1-11(제정)
충청북도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2-27(제정)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05-20(제정)

자료: 한국인권재단 인권아카이브검색결과 참조(2014. 5, 9 기준 참조 및 수정)

(표3)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제정 현황

지 역	조례명	제정 및 공포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2010-11-22 (제정 및 공포)
		2013-10-0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2010-12-15 (제정 및 공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11-01-10 (제정 및 공포)
		2012-03-05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2011-05-06 (제정 및 공포)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2011-08-09 (제정)
		2011-09-22 (일부개정)
		2012-01-01 (공포)
		2012-03-13 (일부개정)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시행규칙	2012-12-06 (제정)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11-08 (제정 및 공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2012-03-12(제정및공포)
		2013-09-25 (일부개정)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조례	2012-07-02 (제정 및 공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2012-07-19 (제정 및 공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기본 조례	2012-08-10 (제정 및 공포)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09-13 (제정 및 공포)
		2012-10-04 (공포)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09-27 (제정 및 공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2012-11-09 (제정 및 공포)
		2013-07-01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03 (제정)

지역	조례명	제정 및 공포년도
달서구		2013-03-04 (일부개정)
		2013-07-11 (일부개정)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17 (제정 및 공포)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21 (제정 및 공포)
		2013-07-12 (일부개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27 (제정)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28 (제정 및 공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28. (제정)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31 (제정 및 공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31 (제정)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1-02 (제정)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1-07 (제정 및 공포)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3-01-08 (제정 및 공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1-09 (제정 및 공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2-18 (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3-21 (제정)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3.27 (제정)
		2013.07.22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4-01 (제정)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4-01 (제정)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4-05 (제정)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4-08 (제정)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4-09 (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2013-04-16 (제정)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3-05-20 (제정)

지역	조례명	제정 및 공포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7-02 (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7-12 (제정)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2013-07-31 (제정)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8-02 (제정)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9-13 (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9-17 (제정)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01 (제정)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30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1-08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2013-11-14 (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2-12 (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2-19 (제정)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2-24 (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03-20 (제정)

자료: 한국인권재단 인권아카이브검색결과 참조(2014. 5.9 기준)

최근까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개별 인권관련 조례의 총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띠는 인권조례는 제정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11.5. 30. 제정)’를 제정하였으나 총칙의 성격을 가지는 인권조례는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2009년에 영남대학교의 인권교육센터와 함께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대구사무소는 2010년 9월 2일에 ‘인권조례만들기를 위한 대구지역 활동가 초청 설명회’를 가졌고 동년 12월 28일 대구지역의 학계,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조례안을 만들어 대구시청에서 ‘인권조례 만들기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이후 3년여동안 더 이상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리지 못하다가³²⁾ 별도의 논의의 장을 통한 충분한 검

도 없이 2014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³²⁾되었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3년 10월 4일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동년 11월 11일에 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경상북도의 인권조례안은 제6조 제1항³⁴⁾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³⁵⁾에서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는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 제1항³⁶⁾에서 인권센터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³⁷⁾에서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권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 상반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제정한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이 12월 정례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제주도지사가 12월 말에 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게 되어 인권조례제정이 무산되었다.

그렇게 된 주요한 이유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설치 문제에 대하여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종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의원발의인 조례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센터 설치

32) 2010년 12월 28일 대구시청에서 ‘인권조례 만들기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된 이후로 약 3년 동안 추가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조례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4년 2월 7일 한국 인권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인권기본조례제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와 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33) 윤성아(행정자치위원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2014. 5. 9 본회의 통과)

34)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5) 제7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36) 제8조(경상북도 인권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37) 제10조(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역시 도지사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행태를 띠기 때문에 이 역시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의회측³⁸⁾은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인권조례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에 도의회가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도지사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합치적인 해석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⁹⁾

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 비교 -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1) 조례의 명칭과 목적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p>명칭: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정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p>	<p>명칭: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명칭: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명칭: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명칭: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38) 신용인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장한 의견임

39)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9617> 검색일 2014. 2. 6.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의규정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p>제2조:</p> <p>1.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p> <p>2.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공무원 등”이란 광주광역시 공무원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4. “민주·인권·평화도시”(이하,“인권도시”라 한다)란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p>	<p>제 2조:</p> <p>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p> <p>2.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p>	<p>별도규정 없음</p>	<p>제2조</p> <p>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p> <p>2. “도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p> <p>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p> <p>2. “시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p>

3) 적용범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4)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는 등 시 행정전반에 인권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5)기관, 단체, 시민 등의 의무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p>제5조(교육감의 책무) 시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과 함께 인권도시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p>	<p>별도규정 없음</p>	<p>제5조(도민의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6)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p>제14조(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증진의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p>	<p>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p>	<p>별도규정 없음</p>	<p>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별도규정 없음</p>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 의회, 시 교육청, 국가인권 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지수 개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제7조(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증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자원	제4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여성, 아동,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제5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p>의 향상을 위한 시책</p> <p>4.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p> <p>5.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p> <p>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p> <p>7. 그 밖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p> <p>제10조(인권지수의 개발·시행)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시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p> <p>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p> <p>6.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인권지수의 개발·시행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p>	<p>전략</p> <p>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p> <p>4.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p> <p>5.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인권지수의 개발·시행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p>	<p>재원 조달 방안</p> <p>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인권지수의 개발·시행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p>	<p>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인권지수의 개발·시행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p>

8)인권교육과 인권보고서발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p>제11조(인권교육 체계 구축) 시장과 교육감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며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나 시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4.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p>제16조(인권백서 발간) 시장은 시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정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권백서”</p>	<p>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인권교육 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p> <p>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p>	<p>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단체·법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p>제7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p>	<p>제6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p>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를 2년 마다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p>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p> <p>④ 시장은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인권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p> <p>제16조(보고서 발간 등) 시장은 인권보장과 증진활동을 위하여 인권침해 사례 등 현황을 수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p>		

9)위원회의 설치와 업무범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제2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	제5조(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	제10조(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p>인권증진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도시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p>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p>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역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p>	<p>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위원의 구성과 임기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p>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인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인 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장과 시 사회복지업무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인)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인) 3.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인) 4. 인권침해 관련 권리구제 국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인)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인)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p>	<p>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 업무 담 	<p>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자치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권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법인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있는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당 부서의 국장(당 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법조계 등에서 인권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 인권영향평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제30조(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시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도규정없음	별도규정없음	별도규정없음	별도규정없음

12) 인권옴부즈맨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p>제32조(설치·운영)</p> <p>① 시장은 인권이 시민의 삶속에 실친 되어 시민의 인권보 장과 증진에 기여하 기 위하여 인권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설 치·운영 한다.</p> <p>② 옴부즈맨은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 로 운영하고, 옴부즈 맨을 대표하는 상임 옴부즈맨으로 지방 계약직 공무원 1명 을 두며 그 외 옴부즈맨은 비상임으로 한다.</p> <p>③ 상임 옴부즈맨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임용 하고, 비상임 옴부즈 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 아 시장이 위촉한다.</p> <p>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 이 있는 사람</p> <p>2.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p>	<p>제18조(설치) ① 시 장은 시민의 인권보 호 및 증진을 위하 여 시민인권보호관 (이하 “보호관”이라 고 한다)을 둔다.</p> <p>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 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 다.</p> <p>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 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p> <p>2. 인권분야에 대 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할 경 력이 있는 사람</p> <p>3. 인권분야에 대 한 전문지식이 있거 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 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p> <p>제19조(임기 및 직</p>	<p>별도규정없음</p>	<p>별도규정없음</p>	<p>별도규정없음</p>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p>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p> <p>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본조신설 2013.4.1></p> <p>제3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 옴부즈맨은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복무 위반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4.1></p>	<p>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p> <p>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p> <p>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p> <p>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p>			

13) 인권센터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제12조(인권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권증진을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제14조(인권상담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인권 보장	제8조(경상북도 인권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별도규정없음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p>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p> <p>2.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p> <p>3. 인권지표(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인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업무지원</p> <p>2. 인권 관련 실태조사</p> <p>3.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p> <p>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p> <p>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p> <p>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p> <p>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부산광역시인권상담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p> <p>2. 인권침해 사례 등 현황 수집</p> <p>3.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p> <p>4. 인권관련 자료의 정보 제공</p> <p>5.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센터에 대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p>	<p>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인권침해 사례 파악 등 관련 실태조사</p> <p>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p> <p>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p> <p>4.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p> <p>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p> <p>6.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지정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④ 인권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4.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반영 추이

-광역시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시장의 의무, 제5조 주민의 협력,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인권지수 개발, 제8조 인권교육, 제9조 인권센터의 설치, 제10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11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제15조 인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제시(2012년 4월)된 이전에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이다. 이중에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권고이후에 조례를 개정하였다.

광주광역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전에 이미 제정, 개정된 조례⁴⁰⁾에서 인권지수 개발, 인권교육, 인권센터의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인권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고 이전에 제정, 개정되었지만 권고안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권고안의 모델이 된 조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된 이후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권고안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⁴¹⁾.

권고안이 제시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였던 경상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40) 2007년 5월 15일에 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전인 2009년 11월 16일, 2012년 1월 1일에 이미 두차례 개정되었다. 인권지수 개발, 인권교육, 인권센터의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1) 광주광역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된 이후에 개정된 조례에서 인권지수 개발, 인권교육, 인권센터의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변함이 없었으며,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2조 제1항 시장은 인권이 시민의 삶속에 실천되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옴부즈맨을 설치·운영 한다. 2013.4.1. 신설)

이 제시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였다⁴²⁾. 처음 제정된 조례는 위원회 설치규정 이외의 인권교육, 인권센터의 설치, 인권영향평가 등의 내용은 담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된 이후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인권교육, 인권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인권지수개발, 인권영향평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경상남도도 인권기본조례제정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극성을 보였으나 인권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도 임의규정화함⁴³⁾으로 그 구체화단계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부산광역시도 권고안이 제시되기 전에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나 제시된 이후에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조례제정시에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임의적이었는데 개정된 조례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전라북도도 권고안이 제시되기 전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이후에 개정되지 않았다. 인권옹호위원회설치와 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권센터의 설치에 임의적으로 도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제시(2012년 4월)된 이후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이다.

충청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되자 곧 이어 인권기본조례가 제정하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개정하지는 않았다. 도민인권증진위원회설치와 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권센터의 설치에 임의적으로 도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라남도의 경우, 인권기본조례제정 이후에 다시 개정되지 않았는데 전라남도 인

42) 2010년 3월 25일에 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된 이후인 2013년 12월 12일 개정되었다.

43)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인권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도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제19조(경상남도 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설치와 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권지수 개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설치와 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권센터의 설치에 임의적으로 시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으로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제도(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한 점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이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인권기본조례제정 이후에 다시 개정되지 않았는데 울산광역시인권위원회설치와 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권센터의 설치에 임의적으로 시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인권기본조례제정 이후에 한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⁴⁴⁾. 전체 조문이 10개조로 가장 간결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인권정책위원회설치와 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권센터설치,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이 제시된 이후 1년이 넘어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별도의 개정은 없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인권증진위원회설치와 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권센터의 설치에 임의적으로 도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영향 정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지수 개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인권위원회설치와 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권센터설치,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경상북도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설치와 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권센터의 설치에 임의적으로 도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

44) 2012년 11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 10일 한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충청북도의 경우, 인권위원회설치와 인권교육실시, 인권센터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이 제시된 이후 가장 늦게 제정된 대구광역시의 경우, 인권교육실시정도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기본적인 인권보장증진위원회의 설치도 임의적으로 시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인권센터설치,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14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내용 중 주요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제시되었던 인권지수개발, 인권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권고안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 하였으며 2년마다 인권백서의 발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광주광역시 인권기본조례는 인권기본조례의 내용과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해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으로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제도(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 중에 인권지수개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제외한 이외의 권고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에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본조례제정에 대한 여론의 힘에 못이겨 인권의 실질화 방안의 제시 및 실행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조례제정이라는 형식에 치우친 입장이었다.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온전하게 받아들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지 않다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광주, 대구, 부산 등 3개 지역에 지역사무소의 설치, 2002년 울산인권운동연대의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운동, 2007년 진주인권협회의 진주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활동, 광주광역시의 2005년 전후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등 소수자관련 인권조례제정 움직임 등 2000년대 이후 인권에 관한 풀뿌리 지역운동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시작,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의 제시,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의 내용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인권기본조례를 통한 인권의 실질화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노력과 역할이 절실하다.

(표4)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 주요 내용 비교

	광주	경남	전북	부산	충남	전남	서울	울산	대전	강원	경기	경북	충북	대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의 수립	0 의무 5년	0 의무 연한 규정 없음	0 재량 연한 규정 없음	0 의무 5년	0 의무 연한 규정 없음	0 의무 연한 규정 없음	0 의무 5년							
인권 지수 개발	0 의무	x	x	x	x	0 재량	x	x	x	x	x	x	x	x
인권 교육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인권 백서 발간	0 의무 2년	x	0 재량	0 재량	x	x	0 의무 2년	0 재량	x	0 재량	x	x	0 의무 5년	x
인권 센터의 설치	0 의무	0 재량	0 재량	0 재량	0 재량	x	0 재량	0 재량	x	0 재량	x	0 재량	0 의무	x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0 재량	0 재량	x	x	0 재량	0 재량	0 재량	0 재량	0 재량	0 재량	0 재량	0 재량	0 재량	x

	광주	경남	전북	부산	충남	전남	서울	울산	대전	강원	경기	경북	충북	대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의무	0 재량									
인권 영향 평가	0 재량	x	x	x	x	x	x	x	x	인권 영향 정책 수립	x	x	x	x
인권 옴부즈맨	0 의무	x	x	x	x	x	0 의무	x	x	x	x	x	x	x

*고딕체로 표시된 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III. 대구광역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필요성과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2009년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0년 9월 2일 ‘인권조례만들기를 위한 대구지역 활동가 초청 설명회’, 동년 12월 28일 인권조례안을 만들어 대구시청에서 ‘인권조례 만들기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⁴⁵⁾ 별도의 논의의 장을 통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14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광역시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를 시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기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고 있는 ‘인권센터설치’에 관한 규정⁴⁶⁾도 두고 있지 않다.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45) 2010년 12월 28일 대구시청에서 ‘인권조례 만들기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된 이후로 약 3년 동안 추가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조례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4년 2월 7일 한국 인권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인권기본조례제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와 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46) 광주광역시와 충청북도는 인권센터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산, 경북, 경남, 전북 등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인권센터설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구, 전남, 대전, 경기 4개단체이다.

제정되었기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와 비교해볼 때 가장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문제점과 도입필요성이 있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개정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개정을 통하여 도입 및 실시될 필요성이 있는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를 시장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마련이다.

셋째, 인권교육의무대상자를 현재의 소속공무원에서 그 범위를 ‘지자체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⁴⁷⁾

넷째, 효율적인 인권증진의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2년이나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시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간접적인 제약기능이 가능할 것이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위탁 등 관계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⁴⁸⁾

47) 제6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48) 아래는 광주광역시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옴부즈맨제도에 관한 규정이다<신설 2013.4.1.>.

제32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권이 시민의 삶속에 실천되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② 옴부즈맨은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옴부즈맨을 대표하는 상임 옴부즈맨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1명을 두며 그 외 옴부즈맨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상임 옴부즈맨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 비상임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본조신설 2013.4.1>

제3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복무 위반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4.1>

제34조(직무)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

1. 시 의회에 관한 사항
2.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4.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5. 그 밖에 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본조신설 2013.4.1>

제35조(조사 및 결과 조치) ① 조사업무는 상임 옴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 옴부즈맨의 합의로 한다.

② 옴부즈맨이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옴부즈맨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맨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한다.

⑤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본조신설 2013.4.1>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이행도구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인권 기본조례의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의견조회 또한 인권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 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기본적인이고 필수적인 사항, 그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참조)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준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조례 제·개정 동기를 부여하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의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 해설서(별지2 참조)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II. 주요 추진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5. ~ 10.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2. 2.부터 학계 및 NGO 등 인권조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같은해 3. 지방자치단체와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권 기본조례 관련 쟁점 및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조하여 표준안 및 해설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Ⅲ.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1.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형식 및 구성

표준안은 인권 기본조례 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각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표준 조문을 제시하였다. 표준안 해설서에는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 및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선택적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표준안에서 제시한 조례명은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표준안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조례의 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을 담은 총칙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2.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안 제1조).

둘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다(안 제4조). 책무의 내용으로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권침해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다(안 제6조).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사업추진 자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협력을 위한 공청회 실시, 기본계획 이행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였다(안 제7조).

다섯째,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다(안 제8조).

여섯째,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고 위원장(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각기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을 적시하였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부록 2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항목	표준안	의미
조례명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시민(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의 제정이유 및 규율사항을 포함
정의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p> <p>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인권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둔 것으로, 인권 기본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인권’, ‘주민(시민)’에 대한 정의를 함.</p> <p>- 제1호는 국내법상 가장 상세히 ‘인권’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활용함.</p> <p>- ‘주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로서 인권 기본조례와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상 거주’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조례의 ‘장소적 효력범위’를 심분 활용하고 인권 기본조례가 기반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주민’의 개념을 넓게 설정함.</p>

항목	표준안	의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이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둔 것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특별시·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 노력이나 관련 정책의 발굴과 함께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함.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적인 대응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 내에서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일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거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진정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여타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지 의무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마련한 것으로, 인권 기본조례의 실행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규정을 둔.
주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	-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가 인권보장의 주체라는 점을

항목	표 준 안	의 미
	<p>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시행에 함께 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협력에 관해 기술함.</p>
기본계획 수립	<p>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범위 내] 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p>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를 규정함.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상 구체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함.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함. - 실질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두고(종합적 또는 특정 집단이나 사안별 실태조사 가능),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함. - 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주기적 평가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실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차년도

항목	표준안	의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인권교육 실시	<p>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인권교육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다룸. - 인권교육수행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담당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의무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현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둠.
	<p>② 시장은 전향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p>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권교육 체계가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인권교육체계 마련의 규정을 둠. - 적절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규정을 둠.

항목	표준안	의미
<p style="text-align: center;">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p>	<p>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인원확충 등의 조치가 필수적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의 이행을 관리·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확충할 근거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인권전담 부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기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함).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이 필수적임. 따라서 제2항에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규정함. -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이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인권지수 개발</p>	<p>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지수는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황, 미래의 목표 및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규정을 둬.
<p style="text-align: center;">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 및</p>	<p>제10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 -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를

항목	표준안	의미
업무	<p>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가장 기본으로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함.</p>
	<p>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독자적인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위와 같이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독자적인 회의소집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소집권과 연동하여 설계하도록 함. - 위원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존중 규정을 둠.
위원회의 구성	<p>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규정함.

항목	표준안	의미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p>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두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상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의 선택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둬. -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 추천에 있어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 시민의 직접참여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 심의결과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위원 가운데 당연직 위원을 두도록 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설정함. - 여성위원 참여 보장 규정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으로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보다 더 많은 비율의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할 경우, 그리고 여성위원 참여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둬.
	<p>⑤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임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p>위원회의 운영</p>	<p>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연○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사유,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둬. - 위원회 개최사유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라는

항목	표준안	의미
	<p>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p> <p>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3. 재적위원 []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위원회 성격을 감안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적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설정함.</p> <p>-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위하여 정기회(분기별 또는 연○회)를 두도록 함.</p>
위원회의 간사	<p>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p>	
조례 등 제·개정시 위원회 의견 청취	<p>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p>	<p>-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둬.</p> <p>- 제1항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향의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p> <p>- 이는 일종의 인권영향평가인 셈인데, 해당 조례나 정책의 실시 과정 및 효과 등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p>

항목	표준안	의미
위원 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 부칙에 시행일 또는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동 규정은 기존에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필요함. - 현행 조례에 의해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그 효력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함.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부록 3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해설서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해설서

1. 조례명

○○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조례명에는 조례의 목적이 표명될 수 있도록 한다.
 - 조례명을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인권 기본조례’라고 규율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이 조례의 성격이 포괄적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조례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인권 증진’만 조례명으로 포함할 경우, 자칫 인권의 개선적 의미로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인권 보장’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조례의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주민(시민, 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 규정에는 인권 기본조례의 제정이유 및 규율사항을 포함한다.
 - 조례의 목적 규정의 내용 속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도록 한다.
 - 위임조례인 경우 상위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권 기본조례는 상위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로 기술할 필요는 없다.

- 조례의 규율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강조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여도 무방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에 관하여서도 기술할 수 있다.

3. 정의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정의규정은 인권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항목인데, 인권 기본조례의 정의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인권’ 과 ‘주민(시민, 도민, 군민, 구민)’을 들 수 있다.
- 제1호의 ‘인권’ 정의에서 원칙적으로 법률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를 준용할 수도 있으나, 인권 기본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위임조례가 아니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풀어쓰는 것이 적절하다.
- ‘주민(시민, 도민, 군민, 구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로서 인권 기본조례와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30일 이상 거주’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해당 조례의 ‘장소적 효력 범위’를 심분 활용하고 인권 기본조례가 기반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주민’의 개념을 넓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주민’의 개념상 외국인 등은 국적에 관계없이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한 ‘주민’에 포함되고,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에 두고 있더라도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한 ‘주민’의 개념에 포함된다.
- ‘인권’ 및 ‘주민’ 외에 필요한 경우 다른 개념(가령, ‘공무원 등’, ‘차별’, ‘인권침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있다.

4.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이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둔 것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의 내용에 위반될 경우 해당 조례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권 기본조례가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인권 기본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정한다.
- 조례의 형식을 고려하여 가급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을 규정한 조항에 반영하도

록 하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포함한다.

-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 노력과 함께 관련 정책 발굴 및 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 제2항과 같이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의무’ 규정을 별도의 항에서 기술할 수 있다.
 -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선 권한의 범위에서 인권침해 시정을 위한 조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거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진정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그밖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제3항의 협력 규정과도 관련이 있다.
 - 다만, 이 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인권침해 ‘판단’과 ‘구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제기관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문 구성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제3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에서⁴⁹⁾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지의무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마련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도 광역자치단체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서 별도로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주민의 협력

-
- 4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가 인권보장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시행에 함께 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협력에 관하여 기술할 수 있다.
- 주민의 협력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으나, 인권 기본조례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책무’, ‘의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민의 협력’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민의 협력 이외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사업주의 책무와 관련하여 지역의 상황에 맞게 추가하여 규정할 수도 있다. 다만,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할 경우에는 현행 법률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넘어서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7.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범위 내]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상 구체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는 그 주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

○ 제2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표준안의 내용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3항의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 실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둔다. 이러한 조사는 필요에 따라 종합적으로 또는 특정 집단이나 사안 등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청회 실시 규정은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공청회 실시 목적을 고려할 때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4항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주기적 평가를 하도록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 제5항과 관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및 계획의 평가를 제10조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이는 실효적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의미도 있음.

8.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향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권교육수행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담당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연 ○ 회' 이상 실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인권교육의무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현재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든다.

-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권교육 체계가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제2항과 같이 인권교육 체계 마련의 규정을 두고, 적절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3항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규정을 둔다.

9.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 부서 설치를 비롯한 인력확충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다.
 -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의 이행을 관리·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할 근거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전담 부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 한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관(가령, 인권센터)를 별도로 설치(지정)하는 경우 그 근거규정을 둘 수도 있다.⁵⁰⁾
 - 이러한 기관은 그 위상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으로 조문의 제목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실무집행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실무기관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⁵¹⁾

50) 인권센터를 설치(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조문을 참조할 수 있다.

제○조(인권센터의 설치(지정)) ① 시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지정)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설치(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1) 이러한 경우 경우 위원회와의 관계, 공무원 파견가능성, 인권센터의 업무 등이 달라질 수 있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2항에서 인권관련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규정한다.
- 제3항에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다. 이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10. 인권지수 개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 지수(Index)란 일반적으로 사회변동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숫자를 말한다. 따라서 지수화의 목적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화하여 변화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인권지수는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부여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두 가지 선택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실무집행형 기관: 이 경우 인권센터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관한 집행부서 및 아이디어뱅크로 존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기본계획안 수립이나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업무 등 전반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업무의 중복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별도의 독립재단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각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나. 위원회의 실무기관형 기관: 이 경우 센터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등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되지만, 독자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상담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지위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폭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인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인권지수는 국제인권규약 등과 현실 도달가능한 목표점을 고려하여 기준점을 설정하여(보통 100%), 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황, 미래의 목표 및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예시> 2012년 기준 00시 시내버스 면허대수(1,000대),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점 100을 설정하고(저상버스 도입대수의 목표로 면허대수의 10%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100대 도입이 100%), 2012년 저상버스 70대를 도입하고 있다면 70%로 산정한다. 이를 2013년, 2014년 단계별로 5% 상향시킨다.

지표항목	2012년	단계별 인권지수 달성 목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저상버스 도입률	70% (70대)	75% (75대)	80% (80대)	85% (85대)	90% (90대)	95% (95대)

- 인권지수의 개발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담당부서나 인권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인권담당부서나 인권센터가 담당하며, 관리책임은 각 지표항목의 지수 관리자인 해당부서가 담당한다(예를 들면 저상버스 도입률의 경우 00시 대중교통과).

11.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〇〇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〇〇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제3항과 같이 위원회에 독자적인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진술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에 대하여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심의기구인 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문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다).
 - ‘의견진술권’ 부여 규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독자적인 회의소집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소집권과 연동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원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존중 규정을 둔다.

12. 위원회의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 구성의 독립이란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기 보다는 적어도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둘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부 인권 기본조례에서 부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회의 소집 및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호선된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기본계획의 수립 등)를 본인이 심의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을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제2항은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두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상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의 선택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 제3항의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정하되, 이때 “소양”이라는 표현 대신 “학식”을 쓰거나 단순히 “전문성을 갖는”으로 해도 무방하다.
 - 위원 가운데 당연직 위원을 두는 이유는 위원회 심의결과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령, 인권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뒤에서 설명하는 간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
 -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위원 추천권자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표

해서 의회, 그리고 시민의 직접참여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우 '인권관련'이라는 의미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추천권자에 있어 집행부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때에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령, 당연직 위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위원 구성이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제4항과 관련하여, 여성위원 참여 보장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으로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보다 더 많은 비율의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할 경우, 그리고 여성위원회 참여 보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 제5항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는 보통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으로 정한다(2년 또는 3년). 그 외에 중도에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를 명시할 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을 호선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적합하다.

13.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연○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사유,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위원회 개최사유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라는 위원회 성격을 감안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적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기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회를 두는 경우 '분기별' 또는 '연○회'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일반정족수로 규정하는 것이 무난하고, 다만, 별도의 특수한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가중정족수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제3항과 같이 소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를 둘 수 있다.
- 제4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예를 들면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위원회의 명칭, 활동기간 등을 규정한다. 또한 기본계획의 제출시기나 심의기간을 세칙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타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나 회의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으로 두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14. 위원회의 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

- 위원회 간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것으로, 간사의 자격에 관해서는 인권전담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 다만,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민간인인 위원장이 직접 공무원에게 업무에 관하여 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사의 업무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위원회 의견 청취

제14조(위원회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 제2항은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는 일종의 인권영향평가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조례나 정책의 실시 과정 및 효과 등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러한 평가는 해당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일반항목과 개별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일반항목에는 해당 조례 및 정책의 목적, 대상주민 등에 대한 특정, 차별적인 요소의 포함 여부, 대상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결정 절차에서의 인권적 영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별항목에는 해당 조례 및 정책의 내용이 국제인권규범이나 법령에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현재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평가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답변서로 간단하게 이 해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점검한다는 취지에 부

합하느냐 여부이다.

- 위원회의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향평가 보고서 요구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구속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인권영향평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6. 위원 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관련 근거규정을 둔다.
 -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관련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명을 기술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둔다.

18.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부칙에 시행일 또는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시행일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과 일정한 기일 이후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 부칙 제2조는 기존에 기본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현행 조례에 의해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상황에서 인권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그 효력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과조치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부록 4

시·도 인권 조례

-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5-20 조례 제 45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 2012.9.28.] [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 2012.9.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업무지원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

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0조(직무) ① 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 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 ③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보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① 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상담 신청인이나 위원회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67호,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23.] [서울특별시규칙 제3945호, 2014.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받거나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센터에 상담 등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라.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란 피신청인이 속한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신청)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인권센터의 장에게(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민원관련 부서는 접수된 민원이 인권침해사항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 이라 한다)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4.1.23>

[제목개정 2014.1.23]

제4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센터장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각하·기각 및 조사중 해결) ① 보호관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신청 내용이 조례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

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호관은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신청한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기각할 수 있다.
- ③ 보호관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센터장에게 통지하고, 센터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보호관은 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신설 2014.1.23>

[제목개정 2014.1.23]

제8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보호관이 조사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보호관이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구두 또는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4.1.23>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처리기한)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① 보호관은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검토포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 ② 보호관은 예비검토포한 사건 중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보호관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경우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요구한다.
- ④ 보호관은 인권침해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신청인이 제3자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해자)과 피신청인,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서면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진술

청취를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개정 2014.1.23>

⑤ 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신청인
2. 신청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⑥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이를 복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⑦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하는 인권센터 직원, 조례 제20조제4항의 조사인력(이하 "보호관 등"이라 한다)은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청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⑧ 보호관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신청인 등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

제11조(조사결과의 통지) ① 보호관은 조사결과를 센터장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조치할 사항을 문서에 기재하고,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센터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기관장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센터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신청인 또는 기관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원사건 담당자가 아닌 보호관이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한 이의신청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13조(보호관 협의회) ① 보호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호관 전원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는 보호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가 궐위 되었거나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표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보호관의 직무,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이의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4.1.23>

부칙 <제3945호, 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2-22 조례 제 4731호

(일부개정) 2013-07-10 조례 제 488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03-19 조례 제 50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여성, 아동,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9>

제4조의2(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구·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 또는 관련 기관에 개선 또는 자치법규·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5조(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3. 19>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3. 19>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안전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권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 3. 19>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단체·법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

- ④ 시장은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인권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2014. 3. 19>

제1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6) ~ (32) 생략

부칙<2014. 3. 1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5-15 조례 제 3491호
(전부개정) 2009-11-16 조례 제 3756호
(전부개정) 2012-01-01 조례 제 4032호
(일부개정) 2013-04-01 조례 제 42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정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광주광역시 공무원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주·인권·평화도시”(이하, “인권도시”라 한다)란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는 등 시 행정전반에 인권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시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과 함께 인권도시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증진 정책

제7조(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증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이념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시책
4.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5.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6.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지수의 개발·시행)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시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 체계 구축) 시장과 교육감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며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나 시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4.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제12조(인권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인권지표(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 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 의회, 시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증진의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체계 강화) 시장은 인권증진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인권백서 발간) 시장은 시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권백서”를 2년 마다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정책

제17조(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권도시 육성시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권도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고 5년 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정비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도시의 역사성
2. 인권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3. 인권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4. 각종 인권도시 육성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인권도시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등

③ 육성계획은 제7조에 따른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시책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인권 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3.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19조(인권도시 광주현장) 시장은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을 포함,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권도시 현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20조(국제협력 강화) ① 시장은 세계적인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화 추진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인권·평화복합센터 조성) 시장은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상시적 학습관, 인권체험관, 인권의제에 대한 연구소, 국내·외 활발한 교류와 연대를 위한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권·평화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제22조(상징공간의 조성) 시장은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등) 시장은 인권존중 및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제2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도시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인 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장과 시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인)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인)
3.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인)

- 4. 인권침해 관련 권리구제 국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인)
-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인)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장은 상호 협의정신에 근거하여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제2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민간인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위촉 해제 할 수 없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 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으로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시 인권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

제30조(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시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옴부즈맨<신설 2013.4.1>

제32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권이 시민의 삶속에 실천되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② 옴부즈맨은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옴부즈맨을 대표하는 상임 옴부즈맨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1명을 두며 그 외 옴부즈맨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상임 옴부즈맨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 비상임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본조신설 2013.4.1>

제3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복무 위반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4.1>

제34조(직무)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

1. 시 의회에 관한 사항
2.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4.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5. 그 밖에 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본조신설 2013.4.1>

제35조(조사 및 결과 조치) ① 조사업무는 상임 옴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 옴부즈맨의 합의로 한다.

② 옴부즈맨이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③ 옴부즈맨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옴부즈맨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신청인과 조사대상 기관에 통지한다.
- ⑤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본조신설 2013.4.1>

제36조(지원) 시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권담당관 내에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두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4.1>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1>

부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광주인권도시추진기본계획’을 제7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권증진 기본계획(인권도시 육성계획)으로 본다.

부칙<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9-01 규칙 제 291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장에 규정된 인권옴부즈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 및 광주인권헌장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차별행위”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3.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에게 상담 등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4.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람으로서 조례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신청방법) 조례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조사를 옴부즈맨에게 신청할 수 있고, 옴부즈맨은 필요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맨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옴부즈맨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조사기록표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각하 및 기각) ① 옴부즈맨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조례 제34조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신청 내용이 조례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 4.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고 신청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 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옴부즈맨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옴부즈맨은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신청한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기각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맨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한)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건의 조사 등) ① 조사업무는 상임 옴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비상임 옴부즈맨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에 참여한 비상임 옴부즈맨이나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맨은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 ④ 옴부즈맨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과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옴부즈맨은 예비검토한 사건 중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⑥ 옴부즈맨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접수번호 및 신청인
 - 2. 신청의 개요
 -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 5. 조치사항
- ⑦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조사기록표지와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이를 복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옴부즈맨 회의) ① 옴부즈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옴부즈맨 전원으로 구성된 인권 옴부즈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상임 옴부즈맨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회의의 개최는 상임 옴부즈맨의 요청이 있거나 비상임 옴부즈맨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회의는 재적 옴부즈맨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의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결정은 제4항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 인권침해소위나 차별행위소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결정을 위한 조사내용이 옴부즈맨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맨은 회의에서 제외된다.
- ⑥ 회의는 회의 운영, 옴부즈맨의 직무,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⑦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하는 비상임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옴부즈맨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옴부즈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옴부즈맨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와 결정 등의 비공개) 옴부즈맨의 조사 및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결정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부칙<201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1-11 조례 제 34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경상북도 인권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 파악 등 관련 실태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지정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인권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법인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평가 및 개정 과제 토론회

| 인 쇄 | 2014년 7월

| 발 행 | 2014년 7월

| 발행인 | 권 혁 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 주 소 | (700-732)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6층

| 전 화 | (053) 212-7000 | F A X | (053) 212-700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참디자인

| 전 화 | (053) 256-6695 | F A X | (053) 256-6669

| ISBN | 978-89-6114-348-6 9335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산권 전부를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
업적인 용도 사용 등)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700-732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6층
대표전화 국번없이 1331 팩스 (053) 212 7007
www.humanrights.go.kr blog.naver.com/humandg